

2024학년도 학점인정시험 및 학력진단평가

형법 정답 해설

번호	정답	이 유
1		A: 죄형법정주의 B: 법률주의(관습형법금지원칙, 성문법원칙), 소급효금지원칙, 명확성원칙, 유추해석금지원칙, 적정성원칙
2	X	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완전히 반비례적 관계에 있다.
3	0	“형의 집행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...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...” (대판 1997.6.13., 97도703)
4	X	[근거제시]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(대판 2018.10.25., 2015도17936)
5	X	“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, 그 목적, 형법 제262조의 연혁,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,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.” (대판 2018.7.24., 2018도3443)
6	X	“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'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'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률,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.” (대판 2001.9.25., 2001도3990)
7	X	형법 제7조에 따라, 임의적 산입이 아닌 필요적 산입임
8		가. A: ⊖ 상태범 나. B: ⊖ 진정신분범, C: ⊕ 부진정신분범 다. D: ⊗ 추상적 위험범 라. E: ⊖ 거동범
9	0	대판 2015.11.12., 2015도6809 전합
10	0	대판 1994.3.22., 93도3612
11		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. 구체적 부합설, 법정적 부합설(판례) 모두 “A에 대한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나, 과실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A에 대한 살인미수죄만 성립 ”
12		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. 구체적 부합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설이 “B에 대한 살인기수 성립 인정”
13	0	대판 1984.2.28., 83도3007

14	0	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성립(대판 93도1873)
15		[단답형] 정당행위, 정당방위, 긴급피난, 자구행위, 피해자승낙
16	0	[근거제시] 형법 제21조 제1항(정당방위)
17	0	대판 1005.1.12., 94도2781
18		[단답형] 책임
19	X	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.
20	X	“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” (대판 68도400; 96도638; 94도581)
21	X	“법을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.” (대판 2021.11.25., 2021도10903)
22	0	대판 2015.1.22., 2014도10978 전합
23	0	대판 1985.11.12., 85도2002
24	X	[근거제시] 미수범은 범죄실행에 대한 고의를 가진 자를 전제로 처벌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임. 따라서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음
25	X	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,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. 즉, 乙이 강간시 망을 보았으므로 성폭법위반(특수(합동)강간죄)의 기수가 인정됨 (대판 1986.3.11., 85도2831)
26		[단답형] 대항범 : “소위 대항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” 대판 1985.3.12., 84도2747.
27	0	대판 2003.3.28., 2002도7477
28	0	대판 1992.1.17., 91도2837
29	X	[근거제시] 교사의 착오에서,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, 질적 초과가 본질적인 경우에 해당함. 교사자는 교사범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으면 교사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됨. 그러나 절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교사자에게는 아무런 죄책도 부담지을 수 없음)
30		[단답형] [<통설>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성립과 처벌, <판례> 제33조 본문에 따라,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성립,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]
31	X	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.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가능함
32	X	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,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, 도달은 하였으나 상

		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약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(대판 2007.9.28., 2007도606 전합)
33	0	대판 2020.11.19., 2020도5813 전합
34	가. 0	대판 2021.9.9., 2020도6085 전합
	나. X	
35		가. (㉠ 강도죄, ㉡ 사기죄, ㉢ 공갈죄) 나. (㉣ 손괴죄, ㉤ 권리행사방해죄) 다. (㉥ 배임죄, ㉦ 컴퓨터사용사기죄, ㉧ 강도죄, ㉨ 사기죄, ㉩ 공갈죄)
36	0	계좌이체를 한 행위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뿐, 계좌이체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가 되어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음 (대판 2008.6.12., 2008도2440)
37	0	대판 2021.2.18. 2016도18761 전합
38	X	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'우주물'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'자기 소유의 물건'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,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,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(대판 2009.10.15., 2009도7421). 즉,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(제167조 제2항)가 성립한다.
39	가. 0	대판 2007.12.13., 2007도7601
	나. X	"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,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." (대판 2004.4.16., 2004도353)
	다. X	[근거제시] 丙은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고죄이다
40	0	대판 2000.1.21., 99도4940